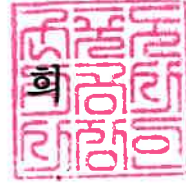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9월 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7호

## 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(여비의 결제 및 정산)** ①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숙박비와 교통비를 결제할 때에는 「법인카드 관리지침」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교통비 중 항공운임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항공사 또는 발권대행사 등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
- ③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와 교통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(또는 확인)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자	직 위 성 명 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 길 라 현 (390-7648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1조(여비의 결제 및 정산)</b></p> <p>① <u>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숙박비와 교통비를 결제할 때에는 「법인카드 관리지침」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<u>교통비 중 항공운임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항공사 또는 발권대행사 등 항공권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</u></p> <p>③ <u>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와 교통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(또는 확인)을 하여야 한다.</u></p>